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(현행조례 내용으로 환원)

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8조(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</p> <p>1.~1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8조(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</u></p>